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명·상호 대여 및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54호)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63호)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성명 또는 상호 대여 행위의 제재 근거 마련(제2205454호)	3
2. 부정청탁의 제재 근거 마련(제2205463호)	9

I. 제안경위

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5454호)

가. 발 의 자 : 박형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1.

다. 회 부 일 : 2024. 11. 12.

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5463호)

가. 발 의 자 : 박형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2.

다. 회 부 일 : 2024.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5454호)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

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5463호)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성명 또는 상호 대여 행위의 제재 근거 마련(제2205454호)

가. 개정안 요지

- 시·도지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한 공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66조 제1항 제7호).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 제4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①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7.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 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7.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등록증·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사 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 한 경우
8. ~ 15. (생략)	8. ~ 1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등록증·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와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 거나 시공한 자
5. (생략)	5.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¹⁾²⁾.

1)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를 말함

○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³⁾,

이를 위하여 공사업자가 타인에게 ①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②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⁴⁾.

○ 그런데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고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⁶⁾,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음.

-
- 2)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 3)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4)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5)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7.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6)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는 행위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정보통신공사를 수급·시공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제재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모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와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두 행위 모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전기공사업법」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무자격자의 자격 대여 및 부실시공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자격 대여행위는 자격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2. 부정청탁의 제재 근거 마련(제2205463호)

가. 개정안 요지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정보통신공사등”)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3조의2 제1항).
- 국가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⁷⁾이 발주한 정보통신 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및 법인,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2항·제3항).
- 국가등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가 안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발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63조의3).
-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음(안 제66조 제1항 제10호의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7)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정책의 수립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관계기관장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66조 제3항).

-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제1호)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제3호)
- 시·도지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66조의2 제1항).
- 안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 제4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3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현행	개정안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이하 “정보통신공사등”이라 한다)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등이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등이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10. 삭제	<u>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제63조의3(위반사실의 통보) 국가</u> <u>등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가 제63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제6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11. ~ 15. (생략) ② (생략) <u><신설></u>	<u>10의2.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u> 11.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관계기관장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u> 1. <u>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u> 2. <u>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u>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① <u>시·도지사는</u>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지처분을 받은 경우</u> 3. <u>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u> ④ 제1항 및 제3항----- ----- ----- -----.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① <u>시·도지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 ----- 제66조제1항제4호·제10호의2 및 제3항-----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 ----- ----- -----.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 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시공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또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수행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반면 유사한 건설공사 관련 법률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아직 관련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건설공사 관련 법률의 부정청탁 제재 근거8)>

법률	의무 내용	제재수단
건설산업기본법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시공 관련 부정청탁 금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업체선정 관련 부정청탁 금지	- (위반행위자가 건설사업자인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이해관계인의 부정청탁 금지	- (위반행위자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인 경우) 자격취소 또는 3년 이내 자격정지 - (위반행위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인 경우) 등록취소 또는 3년 이내 영업정지
소방시설공사업법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및 소방시설 공사등의 시공·수행 관련 부정청탁 금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 업체선정 관련 부정청탁 금지	- (위반행위자가 소방시설업자인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정지의 경우 2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개정안)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및 정보통신 공사등(설계·시공·감리) 수행 관련 부정청탁 금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등	- (위반행위자가 공사업자인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영업정지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 가능

법률	의무 내용	제재수단
	업체선정 관련 부정청탁 금지	- (위반행위자가 용역업자인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영업정지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 제공 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권고안(2018.2.5.)에서 건설공사 관련 개별법령을 개정하여 뇌물 제공업체의 제재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¹⁰⁾¹¹⁾.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정보통신공사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8) 각 법률의 구체적인 조문은 참고자료 1 참조

9) 단, 3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 시 2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 과징금. 3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 2회 이상 시 등록 말소

10) 공공조달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인 원청업체가 하도급자를 통해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공공조달계약 법령상 제재가 불가하므로 원청업체가 법령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자를 뇌물 전달 통로로 이용할 우려가 있어, 건설공사 관련 개별법령에 제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11) 국민권익위원회가 뇌물 제공업체의 제재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대상 기관 및 관련 법령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소방청의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임. 이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최근 관련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금지의무의 주체 관련

- 안 제63조의2 제1항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의무의 주체에 용역업자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에 관여하는 당사자는 발주자, 공사업자(수급인·하수급인), 용역업자로 구성됨¹²⁾.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함.
 - ‘공사업자’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자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하수급인’이라 함.
 - ‘용역업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안 제63조의2 제1항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금지의무의 주체에는 발주자와 공사업자(수급인·하수급인)뿐만 아니라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안 제63조의2 제1항에는 용역업자가 금지의무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의 ‘이해관계인’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더욱이, 안 제63조의3에서는 국가등이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가 제63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63조의2와 제63조의3 간 관계를 고려할 때 안 제63조의2 제1항 금지의무의 주체로 용역업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용역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의 권한 관련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등록취소의 근거규정은 두고 있으나, ‘용역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등록취소의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안 제66조 제3항은 용역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용역업자의 부정한 청탁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용역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관계기관장에게 용역업자의 등록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업자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의 권한 또한 시·도지사에게 있음¹³⁾.

13)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1. ~ 15. (생략)

○ 반면 용역업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별도의 신고·등록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②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와,

③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를 말함¹⁴⁾.

○ 그런데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 각각에 대한 개별법상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상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하는 것이므로¹⁵⁾, 이에 대한 영업정지의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권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 따라서 용역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② 「기술사법」상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하는 것으로¹⁷⁾, 이에 대한 등록취소의 권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기술사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 따라서 용역업자가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인 경우 과학기술정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6)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17)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①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18)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장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③ 「건축사법」상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 자격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¹⁹⁾, 건축사 등록취소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건축사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

- 따라서 용역업자가 건축사인 경우 우선 개정안에 따른 제재조치가 건축사 등록취소인지 아니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인지를 우선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19)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0)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시·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종합하여 보면, 용역업자가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인 경우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등록취소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용역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인 경우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뿐만 아니라 영업(업무)정지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문언을 수정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개정안에 따른 사유 발생 시 권한 있는 자가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¹⁾.

21)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위반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규정을 두고 있는 건설공사 관련 개별법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차이가 있음.

①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제재를 두고 건설공사의 설계·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건설공사의 설계·감리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②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모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감리업자 모두 시·도지사가 제재함.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소방시설의 설계, 공사, 감리, 방염처리 모두 소방시설업에 포함되며, 소방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공사업자와 설계·감리업자 모두 시·도지사가 제재함.

※참고 1: 건설공사 관련 법률의 부정청탁 제재 근거조문

1)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5(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

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참고 2: 정보통신공사업 현황(2024.5. 기준)

□ **공사업 등록현황**

- 공사업 등록업체 약 1만2천4백여개, 종사자 약 39만명 규모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5월
등록업체(개)	9,947	10,316	10,834	11,454	11,964	12,337	12,535
회원업체(개)	9,212	9,560	9,977	10,508	10,958	11,309	11,459
종사자(명)	438,750	454,135	401,082	411,945	390,401	-	-

* 등록업체에 종사하는 행정업무담당 및 미등록 기술자 포함(매년 경영실태조사 결과 반영)

□ **정보통신기술자 · 감리원** (출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능계	합 계
기술자	23,785	55,648	31,256	88,644	28,787	228,120
감리원	16,401	24,850	7,459	6,603	-	55,313

□ **정보통신 용역업자**

- 엔지니어링사업자(출처: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전기전자응용	계
1,564개사	292개사	35개사	243개사	2,133개사

- 기술사사무소 개설자(출처: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전기전자응용	계
68개사	49개사	2개사	32개사	151개사

- 건축사(출처: 대한건축사협회)

- 정회원 등록자 : 16,792명 (건축사 사무소 15,769개)

문 의 처
02)6788-5230